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변경에 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1351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1. 제안이유

- 가. 본 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에 관한 건으로 시 소유 토지 위에 자치구 소유의 영구시설물 설치 축조를 위해 제263회 임시회 안건(의안번호 : 09-675호)으로 상정하여 2015. 9. 18. 원안가결로 동의를 득하였으나,
- 나. 이후 자치구에서 건축계획 변경을 사유로 당초 내용과 달리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창천동 4-113)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토지이용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 60%, 용적률 : 200%)
- 재산가액 : 732,200천원(280 m^2 × 공시지가 2,615천원)
- 세부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적(m^2)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서대문구 창천동 4-113	대	204.2	280	75.8 m^2 증가 (창천동 4-62에서 분할)

나.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창천동 4-113)
- 세부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면적	건축면적	122.52㎡	139.21㎡	16.69㎡ 증가
	연면적	490㎡	524.52㎡	34.52㎡ 증가
용도	지하2층	-	공연장	지하 1·2층 통합
	지하1층	공연장(연습실)	스튜디오	
	1층	갤러리	갤러리 및 카페	
	2층	창작기획실	창작기획실	
	3층	사무실 및 세미나실	사무실 및 세미나실	
사업비		2,059백만원 (100% 시비)		동일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7년 11월

다. 그 간의 추진사항

- 2015. 02. 27. :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계획 수립
- 2015. 05. 20. : 서울시 투자심사 위원회 조건부 승인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추진하되, 공간임대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조건
- 2015. 07. 17.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5. 09. 10. : 서울시의회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가결

- 2015. 12. 31. :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16. 01. ~ 2016. 02. : 건축부지 경계 및 지형현황 측량
- 2016. 02. 24. ~ 02. 25. : 현상설계 공모 접수
- 2016. 04. 28.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 2016. 05. 2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16. 07. 0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 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나. 재동의 관련 유권해석

- 축조 동의를 득한 영구시설물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행정자치부 질의)

- 지방의회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영구시설물의 설치에 대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공용재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가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시설물의 목적·용도뿐만 아니라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 소유 토지 위에 자치구가 공용재산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하고 시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당초 동의 받은 영구시설물의 규모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다. 예산 조치 : 2015년 2,059백만원 기확보(시비100%)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일반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